

심문기일	심문종결
------	------

주심	나
----	---

사 건 2025카합50253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조태욱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

2026. 1. 28.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철, 전세영, 배용만

양주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귀중

목 차

1. 이 서면의 취지	1
2.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의 부적법성	2
가.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의 요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추가	2
나. 관련 법리	2
1) 일반적인 판단 기준	2
2) 가처분에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	3
다.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은 본래 신청을 기준으로 신청 기초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3
3. 채권자의 구석명신청 및 보조참가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문제점	4
가. 신청 요지	4
나. 문제점	4
1) 보전소송에서 허용되는 증거신청에 관한 법리에 따를 때, 채권자와 보 조참가인의 증거신청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2)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증거 신청이 필요 없기도 합니다	5
3)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가처분 절차 외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6
4. 결론	7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

사건 2025카합50253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조태욱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음

1. 이 서면의 취지

채무자는 이 서면을 통해, 주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①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이 부적법하고, ② 채권자와 채권자 보조참가인¹의 증거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 위주로 설명드리고, 다음 보충서면에서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실체적인 주장 및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¹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합니다.

2.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의 부적법성

가.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의 요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추가

채권자는 심문종결 이후인 2026. 1. 23.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외에 채무자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2025. 11. 21. 자, 2025. 12. 2. 자, 2025. 12. 9. 자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결의²의 효력 정지까지도 구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 법리

1) 일반적인 판단 기준

민사 본안소송에서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사실심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그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² 이하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라고 합니다.

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010다28345 판결).

2) 가처분에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

가처분 역시 소송으로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 역시 본래 신청과 신청기초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채권자들의 2022. 9. 8.자 신청취지 변경은 채권자 C이 채무자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자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하는 것인데, 이는 공동의회 개최금지나 공동의회결의의 효력 정지·무효 등을 구하는 당초 신청과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독립의 신청으로서 위 당초의 신청과 사이에 신청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2022. 9. 8.자 신청취지변경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12. 자 2022카합5363 결정).

다.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은 본래 신청을 기준으로 신청기초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채권자는 심문종결 이후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의 효력 정지까지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을 추가하였는데,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와 전혀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이고(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 전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반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 추천이라는 한정된 업무만을 결정하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상법 제393조의2). 이처럼 이사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권한, 기능, 구성 및 법적 근거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므로,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신청취지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신청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당초의 신청취지 대상에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까지 추가하는 것은 기존 신청기초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3. 채권자의 구석명신청 및 보조참가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문제점

가. 신청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①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회의록)과 ② 2025. 12. 9. 자 화상면접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구석명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의 2026. 1. 23. 자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 3-4면). 그리고 보조참가인은 2024년, 2025년 이사회 의사록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일체의 제출을 명하는 취지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보조참가신청서 5-7면).

나. 문제점

1) 보전소송에서 허용되는 증거신청에 관한 법리에 따를 때, 채권자와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보전소송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요건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제301조),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로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9조). 보전소송에서는 문서 등의 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즉시성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심문절차에서는 증거조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인신문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9. 자 2020카단20110, 2020카단808839 결정).

위 법리에 따를 때, 채권자의 구석명신청³과 보조참가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증거신청이 필요 없기도 합니다.

민사 본안소송이든 보전소송이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쌍방 다툼이 있는 경우에 어느 일방의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가령 ① 채무자의 최대주주가 2024. 3. 20.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자동차로 변경된 사실, ② 조승아가 채무자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024. 3. 26.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 ③ 조승아가 2025. 11. 4. 자 이사회에 참석하였지만 2025. 12. 16. 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④ 조승아가 2025. 11. 21. 자, 2025. 12. 2. 자, 2025. 12. 9. 자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사후에 발견한 사외이사 자격 문제로 그간의 이사회 결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무효라고 볼 것인지, ②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규정에 반하는 이사회의 구성이 이사회 결의의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이는 전형적인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상 채권자와 보조참가인의 증거신청은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현재 이 사건 신청 절차를 통해 쟁점과 무관한 다른 자료들을 모색적으로 확보하여 추가적 분쟁을 검토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³ 채권자는 '구석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만, 그 실질은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의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는 다음 보충서면에서 이 사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역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에 필요한 소명방법을 제출하겠습니다.

3)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가처분 절차 외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특히 보조참가인의 경우, 문서제출명령이 없더라도 별도의 비송절차⁴를 통하여 이사회 의사록과 이사회 내 위원회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보조참가인은 현재 이 사건 가처분 절차 외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이사회 의사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을 한 상태인데, 보조참가인의 열람등사 신청 범위가 방대한 관계로 채무자는 현재 보조참가인에게 제공할 자료를 준비 중이고 조만간 보조참가인에게 열람등사케 할 예정입니다. 보조참가인 스스로도 위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서 2026. 2. 7.까지 제공해줄 것을 채무자에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가처분 절차 내에서 즉시성이 없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⁴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 채권자의 구석명신청, 그리고 보조참가인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전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8.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철

담당변호사 전세영

담당변호사 배용만

담당변호사 양주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귀중